# 투 자 및 자 금 운 용 업 무심 사 에 관 한 세 칙

### 목 차

제1장 총칙1
제1조 목적1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기본원칙 및 심사기준
제3조 투자 및 자금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 심사대상
제5조 재심사 대상2
제6조 심사시기
제7조 심사기준
제8조 심사절차
제9조 심사실시
제10조 심사결과의 처리
제3장 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 구성
제12조 소위원회 구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의 의무
제15조 회의
제16조 기능
제1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18조 수당 및 여비
제4장 보칙
제19조 세부사항

#### 투자 및 자금운용업무에 관한 세칙

2005.10.17 제정(규정제721호) 2006. 5.26 개정(규정제757호) 2008.11.10 직제시행세칙 개정(규정제841호) 2009. 8.26 직제시행세칙 개정(규정제872호) 2011.12. 2 직제시행세칙 개정(규정제946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1160호) 2021.12.1. 개정(규정제1354호) 2023.6.2. 일부개정(규정제1427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투자 및 자금운용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4., 2021.12.1>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투자 및 자금운용 업무 심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21.12.1>

#### 제2장 기본원칙 및 심사기준

- 제3조(투자 및 자금운용의 기본원칙) 이사장은 투자 및 자금운용 업무를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성·안전성 및 유동성이 종합적으로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대상) ① 이 세칙에 의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2.1>
  -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기본사업 이외의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7.12.4., 2021.12.1>
  - 2. 해외투자 또는 외자유치 규모가 원화 100억원, 외화 1천만불 이상인 사업
  - 3. 외환, 금리 위험 혯지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4. 총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국내외 채권 발행계획
  - 5. 기타 이사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1. 법령 또는 국가 관련계획에 의하여 미리 확정된 사업

- 2.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계획의 보완을 요하거나,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타당성을 인정받은 명백한 사업 <개정 2021.12.1>
-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또는 업무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제5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
  - 1. 투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심사완료 후 총사업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23.6.2.>
  - 2. 투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심사완료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제6조(심사시기) 투자 및 자금운용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제7조(심사기준) 투자 및 자금운용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
  - 1. 투자 및 자금운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공단 경영계획과의 연계성
  - 3.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4. 재무적 경제성 및 효과성
  - 5.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 6. 공단 재무건전성 등 영향도 <신설 2023.6.2.>
  - 7.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제8조(심사절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인 투자사업 및 자금운용을 하고자 하는 부서가 속한 본부 본부장·자동차안전연구원장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와 심사에 필요한 부대자료를 갖추어 심사요청일 7일전까지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08.11.10., 2011.12.2., 2021.12.1>
  - ② 심의위원회는 심사요청사업 중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의뢰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실시) 심의위원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1>
  -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3.6.2.>
  - 2.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제10조(심사결과의 처리) 심사의뢰자는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제3장 심의위원회 운영

- 제11조(구성) ① 이사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 2023.6.2.>
  - 1.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에서 투자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2.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금융전문가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 회계법인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4. 법무법인, 학계 등에서 국제법률자문업무 등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5. 그 밖에 이사장 및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
  - ④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8.11.10., 2009.8.26., 2011.12.2., 2023.6.2.>
  - 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6.2.>
  - 1. 해당 심의 안건에 용역 ·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2. 심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심사의뢰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위원회 기피·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
  - ⑧ 위원 본인이 제6항의 각 호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위원회 기피·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안

#### 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 제12조(소위원회 구성) ①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세부적인 추가 검 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 1. 투자타당성 소위원회
  - 2.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 소위원회
  - 3. 자금운용 소위원회
  -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2.>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
- 제1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관계법령,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거나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1>
  - ② 위원은 투자 및 자금운용업무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공단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3.6.2.>
  -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위원회 회의 논의사항은 녹음 및 보고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간사는 녹음 여부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 ④ 심의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1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보고서를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1., 2023.6.2.>
-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투자 및 자금운용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공단의 관계 담당자 및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및 여비)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의결을 위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의한 수당·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

#### 제4장 보칙

제19조(세부사항) 투자 및 자금운용업무 심사 및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721호, 2005.10.17.>

이 세칙은 2005년 10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57호, 2006.05.26.>

이 세칙은 2006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시행세칙) <규정 제841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 ①~⑥ 생략

⑦ 투자및자금운용업무심사에관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연구원장"을 "연구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중 "경영기획팀장"을 "경영기획처장"으로 한다.

⑧∼勁 생략

부 칙 (직제시행세칙) <규정 제872호, 2009.08.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 ①~② 생략

③ 투자및자금운용업무심사에관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중 "경영기획처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④~⑫ 생략

부 칙 (직제시행세칙) <규정 제946호, 2011.12.02.>

이 세칙은 2011년 1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규정관리규정) <규정 제1160호, 2017.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354호, 2021.12.01.>

이 세칙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27호, 2023.6.2.>

이 세칙은 2023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투자 및 자금운용업무 심사에 관한 세칙[별지 제1호서식](제11조 관련) <신설 2023.6.2.>

## 심의위원회 위원 []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관리번호		처리기간		
안건명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						
기타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라면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b>→</b>	통보	
신청인		투자 및 자금운용 심의위원회	투자 및 자금 심의위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